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1. 8. 27
총 무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 2001. 6. 22

나.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2001. 8. 23

라. 上程日字 : 2001. 8. 27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文化公報擔當官 : 曺富煥)

가. 提案理由

○ 서산시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2001년 9월말 준공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인이 이용할 때에는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함. (안 제2조)

○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라 전용사용, 연습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정함(안 제9조)

○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수입총액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함(안 제10조)

○ 관람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 체육시설사용허가에 따른 수수료는 500원으로 함(안 제21조)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시에서 시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본 체육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시민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앞서 제안설명된 제정이유와 같이 서산시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2001년 9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본 시설의 관리·운영의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임.

○ 본 제정조례안은 본문 2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각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용대상의 범위와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방법을 분명히 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필요시 체육시설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 그러면 본 조례안 검토결과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 조례안 제9조 (사용료) 제2항중 중계방송료 상행위 및 부속시설 사용료와 조례안 제10조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제2항중 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후 2일이내에 정산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사용료징수 여건상 정산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여 "사용후 익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조례안 제13조(사용료의 반환)제2항중 제2호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의 하자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어 전용사용자가 경기 및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그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조례운영상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 또는 내용을 보완한다면 상위법 및 각조항간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타 시군의 체육시설관리조례와 비교 검토한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조례안 별표가 규정한 각종 사용료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결과 다소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최소한의 실비부담은 필요한 것이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제정시 사용료 그대로 유지된 경우가 있어 현실정이 결여된바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별표 요금은 큰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기 보고드리면서 별첨 조례안 검토조서는 심의시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 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수정가결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9조제2항과 제10조제2항 "사용 후 2일 이내에" 를 "사용 후 익일 이내에" 로 한다.
○ 제12조제4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및 노인등을 위한 행사" 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불우청소년, 장애인 및 농어민을 위한 행사" 로 한다
○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1. 전용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조정한다

○ ○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9조(사용료) ① (생략) ② ---------- ----사용 후 2일 이내까지----- ----------	제9조(사용료) ① 1(현행과 같음) ② ---------- ----사용 후 익일 이내까------- ----------
제10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 (생략) ② ---------- ----사용 후 2일 이내까지----- ----------	제10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 (생략) ② ---------- ----사용 후 익일 이내까지----- ----------
제12조(사용료감면) ① ~③(생략)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및 노인등을 위한 행사 ⑤ 9생략)	제12조(사용료감면) ① ~③(생략)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불우청소년, 장애인 및 농어민을 위한 행사 ⑤ 9생략)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1. 전용사용료 조정안

시설별		기준			체육경기(행사)		체육이외의 행사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당초	1일		100,000	150,000	150,000	200,000
		변경	1회(2시간)		20,000	30,000		
			1일(4시간)				50,000	70,000
	축구장	당초	1일		150,000	230,000	300,000	400,000
		변경	1회(2시간)		40,000	60,000		
			1일(4시간)				100,000	150,000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당초	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변경	주간	1회(2시간)	40,000	60,000		
				1일(4시간)			100,000	150,000
		당초	야 간		150,000	230,000	300,000	450,000
		변경	야간	1회(2시간)	60,000	75,000		
				1일(4시간)			180,000	240,000
테니스장(1면당)		당초	주 간		10,000	15,000		
			야 간		15,000	20,000		
		변경	1일(4시간)		10,000	15,000		
보조경기장		당초	1일		50,000	70,000	80,000	100,000
		변경	1회(4시간)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의안번호	제 21 호
의결년월일	2001. . . (제 회)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1년 6월 22일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5 호

제출년월일 : 2001년 6월 22일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정이유

○ 서산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2001년 9월말 준공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인이 이용할 때에는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라 전용사용, 연습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정함(안 제9조).

다.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수입총액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함(안 제10조).

라. 관람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마.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수수료는 500원으로 함(안 제21조).

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7조, 제128조, 제135조

나. 입법예고 : 2001. 3. 10 ~ 3. 30(특기할 사항없음)

다. 서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2001. 4. 27

서산시조례 제　　호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관람권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개인이 이용(이하 "연습사용"이라 한다)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및 전시 등 행사
7. 기타

제4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또는 분기별로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보수 및 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행사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2.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기타 입장제한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사용기간) ①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	비 고
주 간	05:00~19:00	06:00~18:00	
야 간	19:00~23:00	18:00~23: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체육시설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②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허가시에 납부하며, 중계방송료 상행위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후 2일 이내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습사용의 경우에는 연습사용권(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총액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후 2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등)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2. 연습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5할 가산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전국 및 도민체육대회 등에 서산시를 대표로 참가하는 대표선수 선발전과 훈련을 위하여 경기장을 사용할 때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및 노인 등을 위한 행사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연습사용권 및 회원권은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납부한 전용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금액의 50% 반환
2. 천재지변,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반환

제14조(관람권) ①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관람권 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 하에 행사주최측에서 전담한다.

④매표는 당해 경기장의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에 의

한 사용료를 예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관람금액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 또는 우려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처분 시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전용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자의 책임) ①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

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500원상당의 서산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관리등)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탁관리에 소

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기타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준용규정) ①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산시시세부과징수조례를 준용한다.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체 육 시 설 사 용 료

1. 전용사용료

시설별		기준	체육경기(행사)		체육이외의 행사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1일	100,000원	150,000원	150,000원	200,000원
	축구경기장	1일	150,000원	230,000원	300,000원	400,000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주간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300,000원
		야간	150,000원	230,000원	300,000원	450,000원
테니스장(1면당)		주간	10,000원	15,000원		
		야간	15,000원	20,000원		
보조경기장		1일	50,000원	70,000원	80,000원	100,000원

※ 1시간 초과당 20% 가산

2. 이용사용료

시 설 별	기 준	개 인		단체(10인이상)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육상경기장	1회2시간	2,000원	3,000원	1,000원	1,500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주간(1회2시간)	1,000원	1,500원	500원	700원
	야간(1회2시간)	1,500원	2,000원	700원	1,000원
테니스장(1면당)	주간(1회2시간)	2,000원	3,000원	1,000원	1,500원
	야간(1회2시간)	3,000원	4,000원	1,500원	2,000원

※ 1. 학생, 군인, 노인(65세이상)은 이용료의 50% 감면
2. 월간이용료는 20,000원(인/월)
3. 1시간 초과당 50% 가산

3. 중계방송료

구분		TV	라디오	비고
중계방송	체육경기	80,000원	40,000원	
	체육이외행사	120,000원	60,000원	
녹화촬영 또는 녹음		60,000원	30,000원	

4. 상업사용료

구분		기준	요금
영화촬영(CF포함)		주간	120,000원
		야간	200,000원
애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		1일 1개	5,000원
선전물	게시물부착광고(10m×1m이내)	연간	500,000원
	진열 또는 전람(3.3㎡당)	5일 이내	50,000원
		1일 초과	10,000원
선전책자등 판매대여		매출금액원가×판매수량	판매이익의20%

5. 부속시설사용료

구분	기본료	비고
전광판	200,000원	
스코어판	40,000원	
냉·난방	200,000원	
음향시설	50,000원	마이크사용 1개당 5,000원 추가

※ 기본사용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시간 초과당 해당기본료의 2할 가산